



글로컬6차산업창업문화센터

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간



##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

글로컬6차산업창업문화센터와 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양 기관의 창업기업 활성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체제를 구축하며, 상호 간의 유기적 연대 강화와 협력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활성화와 공동발전, 연계협력 증대, 인적·물적 교류 협력 등 다양한 사업에 협력함으로써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본 협약서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은 긴밀히 협력한다.

1. 경북의 로컬 생태계 조성 예비창업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협업
2. 로컬크리에이터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마련
3. 로컬크리에이터 판로개척 지원 행사 마련
4. 로컬크리에이터 간 교육 및 문화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이 상호 발전을 위해 합의한 사항

**제3조(협력창구)**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업무 전담 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.

**제4조(비밀유지)** 양 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이나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**제5조(협약의 변경)** 양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.

**제6조(해약)** 양 기관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해약 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이득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.

1.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심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
2. 양 기관의 협약서 상의 협력분야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
3. 기타 양 기관이 스스로 해약을 원하는 경우

**제7조(효력발생 및 협력기간)**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한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7월 4일

글로컬6차산업창업문화센터

센터장 김 병 국

김 병 국

(재)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

센터장 이 문 락

이 문 락